

第244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6號

國會事務處

2004年1月8日(木) 午後2時

議事日程(第6次本會議)

1. 국회운영위원장(鄭均桓)사임의건
2. 국회운영위원장보궐선거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
4.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
5.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6.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
7. 유아교육법안(대안)
8.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 관한법률안
9.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안
10. 畜産物加工處理法中改正法律案
11. 이터닝산업발전법안
12. 嬰幼兒保育法改正法律案(代案)
13.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계속)
14.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15.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안(대안)
16.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附議된案件

○ 국무위원(기획예산 金炳日)인사	2
1. 국회운영위원장(鄭均桓)사임의건	2
2. 국회운영위원장보궐선거	2
○ 상임위원장(국회운영 劉容泰)인사	3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정부 제출)	3
4.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3
5.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김정부·김황식·정의화·장광근·김동욱·최돈웅·이완구·이한구·나오연·박종근·임태희 의원 발의)	3
6.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한화갑·강운태·강봉균·구종태·임종석·이용삼·배기운·진갑길·박상희·홍재형 의원 발의)	3
7. 유아교육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5
8.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 관한법률안(김성호 의원 대표발의)(김성호·김부겸·김영환·김원웅·권오을·박양수·박인상·박주천·심재권·신기남·이미경·이재정·유시민·오영식·정병국·정장선·천용택·최용규 의원 발의)	7
9.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안(김성호 의원 대표발의)(김성호·김부겸·김영환·김원웅·권오을·박양수·박인상·심재권·신기남·이미경·이재정·유시민·오영식·정병국·정장선·최용규 의원 발의)	7

10. 畜産物加工處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8
11. 이력농산업발전법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김원길·김택기·김형오·남궁석·박상규·서상섭·이근진·강인섭·이승철·이재오·이재정·유한열·조성준·최병렬·최선영 의원 발의)	9
12. 嬰幼兒保育法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9
16.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0
13.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계속)	11

(14시59분 개의)

○議長 朴寬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議事局長 金成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국무위원(기획예산 金炳日)인사

(15시02분)

○議長 朴寬用 뒤에 서 계신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새로 임명되신 金炳日 장관으로부터 인사가 있습니다.

金炳日 기획예산처장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企劃豫算處長官 金炳日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기획예산처장관에 임용된 金炳日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활을 보다 향상시키고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국회운영위원장(鄭均桓)사임의견

(15시03분)

○議長 朴寬用 기대가 큼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운영위원장(鄭均桓)사임의견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1조제5항 및 제112조제5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鄭均桓)사임의견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회운영위원장보궐선거

(15시04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2항 국회운영위원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宋丙大 의원, 윤경식 의원, 이성현 의원, 정병국 의원, 金孝錫 의원, 韓忠洙 의원, 김성호 의원, 안대륜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局長 金成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난안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각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5시05분 투표개시)

(의사국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寬用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1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20매입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2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기타 득표수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0표 중 172표를 얻은 劉容泰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 상임위원장(국회운영 劉容泰)인사

(15시27분)

○議長 朴寬用 그러면 국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劉容泰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國會運營委員長 劉容泰 劉容泰 의원입니다.

천학비재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 사람을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이 시점에 국회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쌓아 온 여러 가지 능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朴寬用 의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議長 朴寬用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3.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정부 제출)

4.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5.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김정부·김황식·정의화·장광근·김동욱·최돈용·이완구·이한구·나오연·박종근·임태희 의원 발의)

6.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김효석·한화갑·강운태·강봉균·구종태·임종석·이용삼·배기운·전갑길·박상희·홍재형 의원 발의)

(15시29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3항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 의사일정 제4항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정경제위원회 정의화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정의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부산 중·동구 출신 재정경제위원회 정의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자본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증권업협회가 개설하는 코스닥시장, 한국선물거래소 등 3개 거래소를 통합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주식회사로 설립하고 본점을 부산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업무 등 현행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 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그대로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15인 이내의 이사회를 두되, 사외이사가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

며, 이사장은 이사회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부적격자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재선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거래소의 주식회사 전환에 따른 자율규제 업무의 공익성 확보를 위하여 거래소 내에 독립적인 시장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로 하여금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거래소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일인의 거래소 주식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하였으며,

여섯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설립은 기존의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주식회사 등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하고, 통합거래소설립 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설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거래소의 정관 등에서 정하도록 한 이사회 등 거래소의 조직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였고,

둘째, 이사장·시장감시위원장 및 임원에 대한 해임요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해임요구 시 당해 이사장 및 임원 등의 직무정지와 2월 이내의 재선임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셋째, 부칙의 거래소통합절차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포 후 9월 이내에 합병 대상 법인의 회원총회 등에서 합병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직권으로 합병계약서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동일인 보유한도를 초과한 주식보유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주식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증권선물시장의 거래비용 절감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시장효율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수료 등의 변경과 일정 금액 이상의 전산투자에 대하여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쟁점사항의 하나인 증권·선물시장의 청산·결제 기능 개편문제는 향후 정부의 2단계 시장개편방안의 논의 시 검토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추후 증권·선물시장의 청산·결제 기능 개편방안을 확정할 때 통합청산기구의 소재지를 부산으로 하여야 하며, 증권·선물시장의 청산·결제 기능 개편방안을 확정하기 이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정에 따른 조문정리를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유가증권의 1인 매매의 제한행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의 경미한 내용 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金政夫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체납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일괄조회 허용을 통하여 과세의 형평성 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법률체계와 금융실명거래의 비밀보장 등을 감안하여 金政夫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金孝錫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의 체납자 재산 일괄조회 허용에 관한 내용과 金孝錫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중개정법률안에 부동산 투기 혐의자 재산 일괄조회 허용에 관한 기본내용을 이 법안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세청 등 과세 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등 탈루 혐의자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조세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은 특정 점포에 조회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금융기관의 본점에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일괄조회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투기 혐의자 일괄조회와 관련해서는 일괄조회 대상을 부동산의 보유기간·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고, 체납자 일괄조회와 관련해서는 조회 대상 금액을 대통령령에서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 조회 대상 금액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둘째,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법원 및 과세 당국 등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한 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金孝錫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률안은 채납자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일괄조회 허용을 통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둘째 과세 당국이 제출받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 등의 자료를 채납자의 재산조회 등 채납처분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채납자 재산 일괄조회 허용에 관한 내용을 金政夫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반영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 심사보고서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재정경제위원회)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210인 중 찬성 20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214인 중 찬성 211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215인 중 찬성 214인, 반대 1인으로서 국세징수법중개정법률안은 재정경제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유아교육법안(대안)(교육위원장 제출)

(15시41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7항 유아교육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정숙 교육위원회의 김정숙 의원입니다.

유아교육법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의원과 이재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같은 제명의 법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공교육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 법안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아교육과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기본계획, 유치원 및 보육시설 간의 연계운영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아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구체적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유아의 교육과 보호에 관하여 이 법을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는 안 제4조의 규정은 보건복지부 소관 법안인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 제4조에서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하고 있어 법체계상 상충된다고 보아 양 법안에서 이를 삭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유아교육법안(대안)

(교육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이 안건에 대해서는 황우여 의원 외에 3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황우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우여 의원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출신 황우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44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유아교육법안(대안)의 제정이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를 마련한다는 점에 있어서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는 데는 이론이 없으나, 7년여의 산고 끝에 도달한 교육 관련단체 간의 합의로 제안된 안에 따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오늘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유아교육법상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이라는 용어의 의미에는 이미 보호의 기능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유아의 보호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립유치원이 현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유아교육의 공헌도를 감안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미흡한 실정인바, 이미 사립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립유치원에 있어서도 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황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유아교육법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유아교육법안(대안)에대한수정안(황우여 의원 외 38인 발의)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들어오십시오.

그동안에 오랫동안 아주 복잡했던 문제들이 깔려 있는 법안이기에 때문에 신중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우여 의원 외에 38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안(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투표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212인 중 찬성 188인, 반대 5인, 기권 19인으로서 황우여 의원 외 38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법안(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김성호 의원 대표발의)(김성호·김부겸·김영환·김원웅·권오을·박양수·박인상·박주천·심재권·신기남·이미경·이재정·유시민·오영식·정병국·정장선·천용택·최용규 의원 발의)

(15시48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8항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朴世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國防委員長代理 朴世煥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의 朴世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성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특수임무요원과 유족에 대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본 제정법안은 그 표현이 북한을 비롯한 국제관계에 있어 원활한 관계 유지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보상의 수준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명을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에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안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두는 위원회도 유공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로

하는 등 용어나 표현 및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방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 만장일치로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김성호 의원 대표발의)(김성호·김부겸·김영환·김원웅·권오을·박양수·박인상·심재권·신기남·이미경·이재정·유시민·오영식·정병국·정장선·최용규 의원 발의)

(15시53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9항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嚴虎聲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政務委員長代理 嚴虎聲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부산 사하갑 출신 嚴虎聲 의원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

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대부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들이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한 문제점이 인정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현재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원안에 합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특수임무수행자들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동 법률안의 제명을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에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또 법률안의 내용 중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수임무수행자”로 수정하는 등 약간의 체계와 자구 정리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정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무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李完九 의원 빨리 투표하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시55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0항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우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이우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우재 의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사육하는 닭 오리 등을 직접 조리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영세농가에게 자가도축을 허용하고, 축산물가공업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을 분리하여 신설하는 한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체제를 마련하고, 축산물위생감시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 안에서 소 말 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이 안을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畜産物加工處理法中改正法律案 審査報告書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0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중개정법률안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이러닝산업발전법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이상희·김원길·김택기·김형오·남궁석·박상규·서상섭·이근진·강인섭·이승철·이재오·이재정·유한열·조성준·최병렬·최선영 의원 발의)

(15시59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1항 이러닝산업발전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 裴奇雲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産業資源委員長代理 裴奇雲**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전남 나주 출신 裴奇雲 의원입니다.

먼저 李祥羲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지식기반의 확충과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계층 간 지식격차는 확대되고 있고 공급자 중심의 지식전달형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이러닝산업을 제도적, 정책적으로 육성하여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토록 함으로써 지식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식의 대중화를 통하여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러닝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이러닝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을 지원하도록 하며,

셋째, 이러닝의 활성화와 차별금지를 위하여 개인·기업·지역에 대한 이러닝 지원 및 공공부문의 이러닝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기관 증설 방지와 예산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서 새로운 기관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이러닝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이러닝 확산을 위해

서 정보처리시스템 도입, 이러닝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러닝산업발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처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러닝산업발전법안 심사보고서

(산업자원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이러닝산업발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제석 216인 중 찬성 201인, 반대 11인, 기권 4인으로 이러닝산업발전법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嬰幼兒保育法改正法律案(代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6시03분)

○**議長 朴寬用** 의사일정 제12항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심재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경기 안양 동안구의 심재철 의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핵심내용 네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만들었고, 그 등급은 1·2·3등급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간보육시설이 지금까지는 신고 제였지만 체제를 바꿔서 인가제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嬰幼兒保育法中改正法律案(代案)

(보건복지위원장)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원형 의원 외 3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원형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형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부의된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이 유아교육법안(대안)과 비교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아니하므로 영유아 보육에 있어서의 유아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교육법안과 조화를 꾀함과 동시에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육의 내실을 기하려는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평가하여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활 기록부를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전체 보육시설 비용에 보육교사의 인건비 및 초과보육비용을 추가하며,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수납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직장 보육시설 외에 보육시설의 운영

비에 대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은 관련 단체 간 완전합의에 의해서 제안된 수정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고,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嬰幼兒保育法改正法律案(代案)에 대한修正案

(이원형 의원 외 34인 발의)

(부록으로 보존함)

○議長 朴寬用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원형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석 225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서 이원형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6시08분)

○議長 朴寬用 다음은 의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6항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김덕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대리 김덕배 존경하는 朴寬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덕배 의원입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7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선거 관계 법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말로 그 활동기한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선거구획정등에 관한법안을 심사 완료하지 못하므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 편차와 관련하여 현재 헌법불합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현행 선거제도의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 금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감안하여 선거 관계 법을 계속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한은 2004년 2월 9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동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끝에 실음)

○議長 朴寬用 그러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 만장일치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기 때문에 각 교섭단체는 내일까지 특별위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들이 모두 사표를 냈습니다마는, 어제부로 의장이 직접 위원들을 불러서 사표를 반려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활동도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원컨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개혁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지금 각 지구당이 위헌 상태에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계속)

(16시12분)

○議長 朴寬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3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도 안 끝났어요」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을 보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토론하지 말고 정회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토론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林仁培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지 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이것은 본회의에서 유예시켰는데 왜 오늘 또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무슨 유예가 되었습니까?

(「지난번 회의 때 처리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林仁培 議員 의석에서 - 아니에요. 토론해야지요. 토론합니다.)

(「심사보고도 안 됐어요」 하는 의원 있음)

曹雄奎 의원이 심사보고를 다 끝냈습니다. 회의록을 보십시오.

토론하십시오.

(「본회의에 계류시키기로 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결의를 유보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장내 소란)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 유보!」 하는 의원 있음)

(「토론도 유보하고 안건 상정 자체도 유보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林仁培 의원 토론 안 하시겠습니까?

林仁培 의원 토론 안 하시면……

빨리 올라와서 토론하세요.

(「2월 국회로 넘기시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는 것을 왜 이렇게 방해합니까?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하면 농촌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林仁培 議員 단하에서 - 이러면 안 되는 데…… 토론은 해야지요. 반대토론하자고요.)

(「의장님!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더 이상 의장이 스스로 직무유기를 못 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늘 처리하겠습니다.

전부 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민들의 분노가 삭거든 그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2월에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농촌 출신 의원 여러분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통상 추세를 보십시오.

(○林仁培 議員 단하에서 - 장관! 똑바로 하십시오. 장관은 뭐 하는 거요?)

林 의원!

이 FTA가 안 된다고 해서 농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들어가시고 토론합시다. 토론해서 토론 결과로 합시다.

(「의장님! 칠레를 하지 말고 다른 나라를 선택해서 하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이규택 의원 단하에서 - 대통령 온다고……)

대통령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왜 자꾸 대통령을……

이규택 의원! 그렇게 대통령이 겁이 납니까? 왜 대통령, 대통령 그래요?

자리에 들어가시라니까요!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여

러분이 이러면 저도 끝까지 견딜 테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왔다고 하면 앞으로 대통령 오면 건건이 다 통과시켜 줍니까?」 하는 의원 있음)

대통령 왔다고 통과시킨다고 누가 그래요? 그렇게 비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대통령을 그렇게 겁을 내요?

자리에 들어가세요.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당당하게 법대로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국회는 법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후도 법에 어김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와서 통과시킨 결과밖에 안 되니까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 하면 입법부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거수기 노릇한 것밖에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林仁培 議員 단하에서 - 의장님, 이것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토론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왜 우리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알아야지요. 토론을 해 보고 표결은 그때 생각해야지 이렇게 무력으로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의장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3당 총무님들이 이 의안 상정 자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총무회담은 여러 차례 했습니다.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계속해서 했습니다.

(○林仁培 議員 단하에서 - 하여튼 찬성·반대 토론을 해서 국민들한테 알린 후에 우리가 해 주든 안 해 주든 하면 될 것 아니에요? 토론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욕 얻어먹는다니까요. 자리 비켜 주세요. 왜 반대하는지 토론을 해야 된다고요)

하여튼 단상에서 내려가세요. 단상을 점거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불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을 하더라도 농민을 살려야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려가십시오.

(「정회 선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몇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정회 요구한다고 해

서 정회하지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의회를 운영합니까? 어떻게 민주주의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정회 요구하는 것을 절대 받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하고 수차 약속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단 점거하면 나는 절대 안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이러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투표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리를 비켜 주셔야 됩니다. 남이 토론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만큼 반의회적 처사는 없습니다. 왜 남의 발언의 자유를 막습니까?

(「막는 것이 아닙니다. 상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대화는 수개월 동안 했습니다. 충분하게 했습니다. 2월을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2월에는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하십시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대통령이 국회에 오는 것은……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그리고 못 하는 것은 못 한다고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국회에 왔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폄하하면 의회와 행정부 간에 어떤 관계를 유지할 생각입니까?

(「의장님, 대통령이 와 가지고 내 놓은 것이 뭐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내 놓은 것이 있고 없고 간에 입법부와 행정부 간에는 서로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것이 좋은 일이에요. 좋은 것은 좋다고 해야지요. 현재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토론을 계속해서 하실 의향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방해해서 지금 토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점하고 있는 이상 저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자리에 가서 정상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의장님, 이러면 어때요? 13번하고 15번을 묶어서 2월에 하고 오늘은 14번을……」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의사일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토론의 자유를 막고 이렇게 강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후회할 일입니다.

(「의장님 말씀은 국회의원들끼리 서로…… 일부 농촌 의원이 점거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행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협상을 해 가지고 와라 이라고 농촌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설득시켜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FTA 비준을 이렇게 방해하면 농촌이 당장 좋아집니까? 농촌문제가 해결 됩니까?

이런 식으로는 내가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정상적인 발언을 통해서 얘기하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세요.

(「저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협상을 해야지요. 협상도 안 하고 일방적……」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하지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이 정회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왜 앞에만 와서 단상을 점거하면서 의장에게 강요합니까? 정상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하세요.

그런 얘기는 다방에 가서 하세요. 여기서 왜 이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사이 좋게…… 각 당이 평소 때 사이가 좋아 보지요.

(「국정을 논하는 것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합의를 해 오세요. 여러분들 자리에 가서 가지고 의논을 해서……

(「정회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여러분들이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어요. 의논을 하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합의해서 나한테 정상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세요. 앞으로 후배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이 됩니다. 자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후배들한테 많이 가르쳐 주어야 돼요」 하는 의원 있음)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발언을 여러분이 하시라고요.

(○이규택 의원 단하에서 - 국회의원이 112명입니다. 112명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한다는 것이 뭔가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뭘 무시합니까? 발언을 주겠다고 뭘 무시한다는 것이예요?

이규택 의원은 평소 때는 그렇지 않더니, 총무할 때는 안 그렇더니 아주 막무가내가 되어 버렸

어. 그래 가지고는 안돼요.

농촌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우십시오. 나 농촌의원 돕습니다. 얼마든지 토론하시고 투표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도와시다. 이래 가지고 도와집니까?

(○이규택 의원 단하에서 - 정부하고 농민들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더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시간을 달라는 것인지 정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은 왜 대안도 없이 그러니까? 대안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국회를 이런 식으로 파장으로 끝내겠다는 것입니까?

(「파장이 아니지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 책임지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토론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끼리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 측하고 협상을 해야지요. 그다음에 농민하고도 협상을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을 발언권을 얻어서 마이크 앞에서 하세요. 목 아픈데 그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발언하시라니까요.

(「정회 좀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단니까요. 내가 정회를 할 테니까 들어가셔서 요구를 하세요. 여기 서 있으면 …… 여러분의 강요에 따라갈 수는 없어요. 들어가세요.

(「정식으로 정회 요청을 하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5분발언을 신청해 가지고……」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하시라고요.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나한테 왜 물어봐요.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개별적으로 요구를 합니까? 일단 물러가세요.

평소에도 존경하는 金玉斗 의원, 金大中 전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질레도 상원 통과가 아직 안 되었잖아요? 우리 하는 것 보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급하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 끝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

면 토론을 종결시키겠습니다. 바로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운영하시지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내가 국회의장이 되고 난 연후에 과거처럼 날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몇 차례에 걸쳐 여러분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머리 맞대고 논의하면서 국회를 운영해 오지 않았습니까?

왜 토론하자는데 지레 겁을 먹고 그러십니까? 토론이 종결되고, 투표가 선언되고, 그리고 투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겁이 나서 이러십니까?

내가 옛날 권위주의 시대의 의장처럼 사회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투표하지 말고 좀더 설득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이지요」 하는 의원 있음)

누가 투표하자고 그랬습니까? 토론하자고 그랬지.

(「토론이 끝나면 투표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끝나는 것은 여러분들과 다시 논의해서 할 문제 아니에요? 왜 미리부터 토론 시간을 박탈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토론 끝나고 투표로 안 들어간다고 보장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보장은 국회법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과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행정부가 농민들이 요구하는 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고 하니까……」 하는 의원 있음)

내가 행정부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행정부 얘기는 소용없어요.

내가 토론을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은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그다음 문제는 여러분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든지 정회를 요구하든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일방적으로 의장의 명을 받지 않고 이렇게 단상점거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정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선포했으니까 토론을 하고 여러분이 정회 요구를 하시라니까요.

「토론이 안 되면 정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회를 해서 충분한 협상을……」 하는 의원 있음)

정회동의를 하세요. 정회동의를 하시라니까요. 왜 정회동의를 안 하고 이렇게 강점을 하느냐 하는 말이에요.

「몇 명이 나와도 정회를 안 해 주시니까…… 옛날에는 두 사람만 나와도 정회를 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런 방법으로 의사 진행 방해를 하면 승복할 수 없어요.

「의사 진행 방해가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나는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국회를 운영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상적인 발언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서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받아 주시겠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내가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것을 안 들어 준 적이 있습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미 반대토론을 선언하고 林仁培 의원에게 발언을 준 상태입니다. 林仁培 의원이 반대토론한 연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林仁培 의원 나와서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林仁培 議員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김천 출신 林仁培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이 날로 황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이 상정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한 말씀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3월 경북 봉화에서는 농민 한 분이 늘어난 부채를 못 이겨 음독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박 농사를 지으면서 대통령상과 장관상을 타고 신한국인으로 선정된 그야말로 농민 중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린 성공한 농민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만 해도 제주도의 감귤 농사를 짓는 농민, 경북 안동의 농민 등 전국 농민들이 부채에 못 이겨 자살을 했다는 보도가 잇따르더니 급기야는 WTO 개방 압력에 반대하며 이경해 씨가 멕시코에서 할복자살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왜 이처럼 수많은 농민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 두고 자살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농산물 수입을 규제하며,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는커녕 농산물 개방은 대세라며 오히려 수입개방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제 와서는 우리 농민에게 이롭조차 생소한 FTA라는 것으로 또다시 농산물을 개방하며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 간의 협상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준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은 쉽게 시장가치로 평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기능의 실패로 인해 잃어버리는 비시장가치도 함께 계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경제적인 실익이 있더라도 협상 체결에 따른 피해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된 한·칠레 FTA는 이러한 기본준칙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충족된 것이 없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도 없이 한·칠레 FTA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된다면 우리 국회는 두고두고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적인 수입 개방 확대는 곧바로 농업의 파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농산물 수입이 51.2%가 늘어났으면서 농가부채는 27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칠레 FTA가 통과되면 또다시 1080여 종류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20~30%씩 낮아지고 5~9년이 지나면 완전 무관세로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칠레는 과수농업에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자랑하며 대부분의 농장이 500ha 이상으로 미국 자본에 의해 경영되는 세계 3대 농업강국입니다.

그런데 이런 칠레와 완전 무역개방을 해서 과

연 우리 농업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한·칠레 FTA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칠레에 팔고 있는 주력 상품인 자동차, 휴대전화 등 공산품의 관세는 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품목들이 무관세가 돼도 칠레는 우리나라에 비해 인구는 절반에도 못 미치고 국가 구매력과 국내총생산량도 낮아 우리 경제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와 맞바꾼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손해만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셋째,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농업정책도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칠레 FTA의 대책으로 10년간 119조 원을 농촌에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그 구체적인 사용계획도 없는 졸속대책을 가지고 또다시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전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이 체결된 이후 62조 원이 투입됐지만 농촌의 체질을 개선하기는커녕 농가 부채만 증가시키고 국민경제의 부담만 키워 온 경험이 있습니다.

넷째, 수입 개방으로 인해 농업이 파괴될 경우 국가의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농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의 포기는 곧 주권의 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농업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농산물 수입 개방이 추가될 경우 농업이 몰락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그저 개방만 서두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통한 국부의 확대와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사전 대책도 없이 우리나라 농업의 일방적인 피해만을 전제로 하는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날로

황폐화되고 있는 우리의 농업과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공산품 수출이 증가하는 대신에 농업의 피해가 증가한다면 당연히 공산품 수출이익의 일부를 농업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컨대 농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등 교육 지원이나 농가에 대한 각종 보험료 면제 등 보험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제도적인 마련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당연한 처사입니다.

둘째, 그 정도가 극에 달한 농민들의 불신부터 먼저 치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119조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부터 수립·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사 위기에 처한 우리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해서 땅에 떨어진 농민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은 무조건 밀어붙일 사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와 같은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된 이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마련된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의 국회비준 역시 그때까지는 당연히 유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이해하시어 한·칠레간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토론을 듣고 보니까 표결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렸네요. 부결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거 보니까……

약속대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金孝錫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金孝錫 議員 오늘 의사진행발언을 하기에 앞서서 국회의 원만한 진행을 결과적으로 저희가 방해하는 것 같은 인상을 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표결을 연기시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등쌀에 밀려서 올라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농촌 출신이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칠레 FTA는 그야말로 정부의 실책입니다. 정부의 실책을 들고 와서 국회에 비준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정부의 실책인가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칠레 FTA를 시작할 때부터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우리가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FTA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합니다.

하나의 유형은 일본과 EU형입니다. 주로 농산물 수입국의 유형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과 캐나다형입니다.

일본과 EU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신중하게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 멕시코와의 협정에서 주요 농산물에 대한 관세양허를 WTO협상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일본도 세계 최대 무역국이지만 지금까지 협정을 체결한 곳은 단 한 군데 싱가포르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농산물 수입국의 경우에 FTA를 체결할 때 농산물에 대한 것만큼은 대단히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단히 무모하게 농산물 세계 최대의 수출국인 칠레와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무모한 것입니다.

지난번 金大中 정부 2개월을 앞두고 사인을 안 하면 국가신인도에 큰일이 날 것처럼 보고해서 억지로 사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가지고 와서 똑같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인도에 문제가 생깁니까? 칠레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른 나라하고의 FTA 파기를 2건씩이나 했습니다. 97년, 98년에 뉴질랜드와 파나마하고의 FTA를 자국의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기했습니다. 국익에 맞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

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신인도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또 연기가 되면 수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칠레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점유율이 16%에서 13%로 떨어진 것이 마치 FTA가 안 돼서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일본은 왜 칠레에서 자동차시장 점유율이 24%에서 31%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일본이 칠레하고 FTA를 체결했습니까? FTA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우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 전략상의 문제입니다.

FTA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DDA협상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DDA협상이 결렬되고 아마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다시 진행될 텐데, 금년도에 가닥을 잡게 될 것입니다.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게 되려면 DDA협상 이후로 FTA를 연기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상 옳습니다.

우리가 FTA를, 왜 칠레만 있습니까? 일본과도 해야 되고 싱가포르와도 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ASEAN 국가들입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경제성장이 높게 예상되는 지역이 ASEAN입니다.

ASEAN 중에서 태국 같은 나라는 농산물을 빼더라도 지금 FTA를 체결하자고 우리에게 계속 제의를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나라하고의 협상은 놔두고 굳이 칠레하고만 계속 이것이 안 되면 무역이 안 되고 나라 간 수출이 안 되고 이런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일본과의 FTA, 홍콩, 싱가포르와의 FTA, ASEAN과의 FTA는 속도를 내서 추진합니다. 추진을 하고 칠레 부분은 이 다음 문제가 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농업에 대한 대책이 도대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선대책 후비준이라고 하지만 119조가 만들어진 경위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119조가 어떻게 마련되었습니까? 11월 19일 농

민의 날을 앞두고 정부가 부랴부랴 119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농민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농업에 대해서 시장경제를 지향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의 구조조정 없이 어떻게 시장경제를 가지고 우리 농촌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농민들이 農者天下之大本, 농업대국을 이야기 하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러면 우리가 옛날 농업국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원체 살 길이 막연하고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議長 朴寬用 의사진행발언하세요.

○金孝錫 議員 알겠습니다.

곧 끝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 없이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실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표결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2월까지 정부가 농업에 대한 대책을 더 마련해 오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가 잘못하면 큰 저항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불안사태를 겪어 보았지 않습니까? 농민들을 더 설득해야 됩니다. 그림을 다시 그려 봐야 됩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조정 방향을 그려 봐야 돼요. 그런 그림을 가지고 농민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국회 내에서도 FTA 추진을 위한 비상대책위 같은 것을 만듭시다. 만들어서 같이 노력합시다.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지 오늘 이렇게 해서 표결을 밀어붙인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고 이것은 국가에 엄청난 사회적 국가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100명 가까운 의원들이 정회를 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왜 정회를 안 해 주십니까? 3당 총무는 어디에 가 계신 것입니까?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의견을 들어서 정치의 협상력을 발휘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짝 빠져 버리고 어디에 가 계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우선 정회를 해 주시고 표결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이후로 미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朴寬用 알았습니다.

시간을 지키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용하겠습니다.

국회법 규정에 보면, 찬반토론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균등하게 발언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분의 찬성발언만 듣고 의사진행발언한 내용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의원 나오셔서 찬성발언하십시오.

○오세훈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李方鎬 議員 의석에서 - 열우당에서 하지 왜 우리 당에서 먼저 해요!)

(「우리도 신청해 놓았으니까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議長 朴寬用 李方鎬 의원, 남의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되지요.

조용히 하세요.

○오세훈 의원 한나라당 소속 서울 강남을 출신 오세훈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는 국가 간 무역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전방위 개방시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WTO가 개방화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면 FTA는 국가 간, 지역 간 개방화의 현실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FTA는 각국에서 통상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255개의 FTA가 체결돼서 그 중에 184개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2005년까지는 약 250개의 FTA가 발효 예상되고 전 세계 교역량의 51%가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무역의존도가 국민총생산의 70%에 이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닌 생존적 차원에서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시장에 안주할 경우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정책의 추진에는 명과 암이 있습니다.

FTA가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아픔을 겪는 국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개방화의 파도에 대처하기 어려운 농민들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들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FTA지원특별법을 포함한 4대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농민 부문에 대한 투융자 119조 원, 농민 부문 채무상환, 농림사업 20조 원 등 모두 186조 원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던 사과 배 쌀 그리고 성수기 포도 등을 자유화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370여 개 농산물에 대한 자유화를 DDA, 다시 말해서 도하개발아젠다 타결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장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농민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지원이 미흡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것이 현실화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업이 넘어야 할 산이 더 높고 또 많습니다.

세계는 지금 완전 개방화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농업이 지금 시점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앞으로 닥쳐 올 농업 위기는 지금에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보호’라고 하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 아니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칠레와의 FTA는 우리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체결되는 FTA입니다. 따라서 이번 FTA의 비준은 칠레와의 관계뿐 아니라 앞으로 추진되는 FTA의 시금석이 될 것이 명확합니다.

자신의 담장은 허물지 않으면서 남의 담장만 허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칠레 FTA에 서명한 뒤 1년이 가깝도록 비준안 동의를 미루는 사이에 칠레시장에서 국산 자동차의 비중은 2위에서 4위로 이미 떨어졌고, 잘 나가던 휴대전화마저 시장점유율이 2002년 13.6%에서 2003년에 10.3%로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2003년 미국과 칠레 간 FTA가 발효되면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추락해 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수송수단의 발달과 국가 간 무역장벽의 철폐로 제조업은 물론이고 금융, 유통, 서비스,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시장개방은 지금 전 지구적 차원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그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이 예외를 고집하고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0년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수출이 12%씩 증가해야 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시장의 확대는 불가피하며, FTA 등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개방형 대외 통상 전략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FTA가 비준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국제신인도 저하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의 절반을 기록하고 있는 중남미 시장에 대한 진출 교두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수시장의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오늘의 현실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FTA를 더 이상 늦추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하면서 이제는 이것을 통과시켜야 될 때가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朴寬用 찬성자, 반대자 각 한 분들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金孝錫 의원께서 발언하실 때 정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 이것으로 토론을 끝내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기는 몇몇 사람들의 국회가 아닙니다. 제가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정회를 선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정회를 요구했다가 무산되고 했습니다.

金孝錫 의원께서 2월에 이 문제를 처리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2월은 짝수 달이니까 어차피 임시국회가 자동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계산하면 2월 9일이 꼭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2월 9일에 이 법을 처리하도록 하고 정부는 한 달 동안 농촌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의원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충분히 토의해서 2월 9일에는 꼭 처리한다는 약속을 여러분들이 하면 오늘 본회의

를 유보시킬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전체 의견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월 9일 본회의에서 이 FTA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처리합니다. 물리적인 방해할 때는 경호권을 발동하겠다는 의장의 약속도 아울러 합니다.

(「비밀투표는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대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의한 것이 아닙니까?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비밀투표는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의장은 국회법에 어긋나는 짓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법대로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요구에 따라서 무기명 비밀투표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2월 9일 이 문제를 어떤 경우에도 처리합니다. 만약에 이를 물리적으로 방해할 때는 의장은 경호권을 불가피하게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상임위원장 투표 결과

(단위 : 표)

위 원 회	투 표 결 과			
국회운영	劉容泰 172	洪思德 11	김근태 4	
	김덕배 3	安相賢 2	이희규 2	
	정의화 2	金鶴松 1	金晁植 1	
	안대륜 1	기 권 4	무 효 17	

【결의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연월일 : 2004. 1.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주 문

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정당법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 내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 수는 20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4년 2월 9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등 선거관계법을 심사하기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03년 12월 31일자로 그 활동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선거관계법을 계속 심사하려는 것임.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

투표의원(210인)

찬성의원(208인)

강 성 구	강 숙 자	강신성일	강 재 섭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욱
김 락 기	김 만 제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방 림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길	김 일 윤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종 하	김 진 재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형 오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중 이	맹 형 규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상 희	박 세 환	박 승 국	박 시 균
박 인 상	박 중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응	박 종 회	박 주 선	박 진
박 창 달	박 헌 기	박 혁 규	박 회 태
배 기 선	배 기 운	서 병 수	서 상 섭
설 송 응	손 희 정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경 식	신 계 룡
신 영 국	신 현 태	심 규 철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대 룡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세 훈	오 장 섭	원 희 룡
유 재 규	유 흥 수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규 택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수 이 상 회
 이 승 철 이 연 속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원 형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주 영 이 창 복
 이 한 동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협
 이 훈 평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중 석
 임 진 출 임 태 회 장 광 근 장 성 원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회 정 갑 윤 정 동 채 정 몽 준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웅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조 회 욱 주 진 우 천 용 택 천 정 배
 최 명 현 최 병 국 최 병 렬 최 선 영
 최 연 회 최 영 회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허 태 열 현 경 대 흥 문 종 흥 사 덕
 흥 재 형 흥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반대의원(1인)

이 성 현

기권의원(1인)

박 병 윤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11인)

찬성의원(209인)

강 성 구 강 속 자 강신성일 강 재 섭
 강 창 회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동 욱 김 만 제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방 립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선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원 길 김 일 윤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종 하 김 진 재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형 오
 남 궁 석 도 종 이 맹 형 규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규 박 상 천

박 상 회 박 세 환 박 승 국 박 시 균
 박 인 상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웅 박 종 회 박 주 선 박 진
 박 창 달 박 헌 기 박 혁 규 박 회 태
 배 기 선 배 기 운 서 병 수 서 상 섭
 설 송 웅 손 희 정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경 식 신 계 룡
 신 영 국 신 현 태 심 규 철 심 재 철
 안 경 룡 안 대 룡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업 호 성
 오 경 훈 오 세 훈 오 장 섭 원 회 룡
 유 재 규 유 흥 수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규 택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수 이 상 회
 이 승 철 이 양 회 이 연 속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원 형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주 영
 이 창 복 이 한 동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협 이 훈 평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중 석 임 진 출 임 태 회 장 광 근
 장 성 원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학
 전 재 회 정 갑 윤 정 균 환 정 동 채
 정 몽 준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웅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조 회 욱 주 진 우 천 용 택
 천 정 배 최 명 현 최 병 국 최 병 렬
 최 선 영 최 연 회 최 영 회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함 승 회 허 태 열 현 경 대
 흥 문 종 흥 재 형 흥 준 표 황 우 여

기권의원(2인)

김 황 식 이 성 현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14인)

찬성의원(211인)

강 성 구 강 속 자 강신성일 강 재 섭
 강 창 회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권태망 김근태 김동욱 김무성 김상현 김영춘 김용균 김일윤 김진재 김태홍 김형오 나오연 맹형규 박근혜 박상규 박승국 박종완 박주선 박혁규 서병수 송광호 신규철 안상수 양승부 오장섭 유홍수 윤철상 이경재 이만섭 이상배 이양희 이우재 이정일 이한동 이훈평 임진출 장태완 전재희 정몽준 정세균 정창화 조성한

김경재 김기배 김락기 김방림 김성순 김영환 김용학 김정부 김찬우 김택기 김황식 남경필 문석호 박금자 박상천 박시균 박종우 박진태 박희섭 송병대 신계륜 심재철 안상현 엄호성 원희룡 윤두환 윤한도 이규택 이방호 이연숙 이원창 이종걸 이해구 이희규 임태희 전갑길 정갑윤 정문화 정의화 정철기 조웅진

김경천 김덕규 김만제 김병호 김성조 김옥두 김원길 김정숙 김충조 김학송 김효석 남궁석 민봉기 박병석 박상희 박인상 박종웅 박창달 배기선 설송웅 송영길 신영국 안경률 안영근 오경훈 유시민 윤여준 이강두 이근진 이병석 이상희 이완구 이원형 이재오 이주영 이해봉 임인배 장광근 전용원 정균환 정범구 정장선 조재환

김광원 김덕룡 김명섭 김부겸 김성호 김용갑 김원웅 김종하 김태식 김학원 김희선 도종이 박관용 박병윤 박세환 박종근 박종희 박헌기 배기운 손희정 송훈석 신현태 안대륜 안택수 오세훈 유재규 이낙연 이상득 이용삼 이윤성 이재창 이창복 이협 임종석 장성원 전용학 정동채 정병국 정진석 조부영 조정배

최명현 최연희 하순봉 함승희 홍준표 최병국 최영희 한충수 허태열 황우여 최병렬 최용규 한화갑 현경대 황창주 최선영 최재석 함석재 홍문종

반대의원(2인)

이성현 홍재형

기권의원(1인)

김영선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15인)

찬성의원(214인)

강성구 강창희 권기술 권태망 김근태 김동욱 김병호 김성조 김영환 김용학 김정부 김찬우 김택기 김황식 남경필 문석호 박금자 박상천 박시균 박종우 박진태 박희섭 서상섭 송영길 신영국 안경률 안영근 오경훈 유시민 윤두환 윤한도 이규택 강숙자 고진부 권영세 김경재 김기배 김명섭 김부겸 김성호 김옥두 김원길 김정숙 김충조 김학송 김효석 남궁석 민봉기 박병석 박상희 박인상 박종웅 박창달 배기선 손희정 송훈석 신현태 안대륜 안택수 오세훈 유재규 이강두 이낙연 이상득 이용삼 이윤성 이재창 이창복 이협 임종석 장성원 전용학 정동채 정병국 정진석 조부영 조정배

강신성일 구종태 권철현 김광원 김덕룡 김방림 김영춘 김용균 김일윤 김진재 김태홍 김형오 나오연 맹형규 박근혜 박상규 박승국 박종완 박주선 박혁규 서병수 송광호 신규철 안상수 양승부 오장섭 유홍수 윤철상 이경재 이만섭 이상배 이양희 이우재 이정일 이한동 이훈평 임진출 장태완 전재희 정몽준 정세균 정창화 조성한

강재섭 구종태 권철현 김광원 김덕룡 김방림 김영춘 김용균 김일윤 김진재 김태홍 김형오 나오연 맹형규 박근혜 박상규 박승국 박종완 박주선 박혁규 서병수 송병대 신계륜 심재철 안상현 엄호성 원희룡 윤경식 윤철상 이경재 이만섭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수 이 상 회 이 승 철 이 양 회
 이 연 숙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창 이 원 형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주 영 이 창 복 이 한 동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협 임 이 훈 평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태 회 장 광 근 장 성 원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회
 정 갑 윤 정 균 환 정 대 철 정 동 채
 정 몽 준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용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조 희 육 주 진 우 천 용 택
 천 정 배 최 명 헌 최 병 국 최 병 렬
 최 선 영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함 승 희 허 태 열 현 경 대
 홍 문 중 홍 사 덕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반대의원(1인)

이 성 헌

○유아교육법안(대안)에대한수정안

투표의원(212인)

찬성의원(188인)

강 성 구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회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종 태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근 태 김 기 배
 김 덕 규 김 덕 룡 김 덕 배 김 동 옥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방 립 김 병 호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용 환
 김 원 응 김 일 윤 김 정 숙 김 종 하
 김 종 호 김 진 재 김 찬 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학 원
 김 형 오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중 이
 맹 형 규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금 자 박 명 환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천 박 상 회 박 세 환

박 시 균 박 원 홍 박 인 상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응 박 주 선
 박 창 달 박 헌 기 박 혁 규 박 회 태
 배 기 운 서 병 수 설 송 응 손 회 정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경 식 신 영 국 신 현 태 심 규 철
 안 경 름 안 대 룬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세 훈 오 장 섭 원 유 철
 원 희 룡 유 재 규 유 흥 수 윤 경 식
 윤 여 준 윤 영 탁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규 택
 이 근 진 이 나 연 이 만 섭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수 이 상 회
 이 성 헌 이 양 회 이 연 숙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원 형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주 영 이 한 동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협 이 훈 평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장 광 근 장 성 원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학 전 재 회
 정 균 환 정 대 철 정 동 채 정 몽 준
 정 문화 정 병 국 정 의 화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용 규 조 재 환 조 한 천
 주 진 우 천 용 택 최 명 헌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승 수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함 승 희 허 태 열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반대의원(5인)

강 숙 자 권 기 술 김 광 원 김 만 제
 정 범 구

기권의원(19인)

김 영 선 김 정 부 김 충 조 박 상 규
 박 종 희 박 진 배 기 선 서 상 섭
 송 광 호 신 계 룬 심 재 철 유 시 민
 윤 두 환 이 상 배 이 종 결 정 세 균
 정 장 선 조 정 무 조 희 육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

투표의원(212인)

찬성의원(212인)

강 성 구 강 숙 자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회 고 진 부 고 흥 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탁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조 김성호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원길
 김원웅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종호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금자
 박명환 박병석 박병운 박상규
 박상희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주선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운 배기정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손희길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국
 송훈석 송신경 신계륜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오장섭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규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현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한동 이해구
 이해봉 이협 이호웅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태완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균환 정대철 정동채 정몽준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세균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정철 정형근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주진우 천용택 최명헌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한승수
 한충수 한화갑 함승희 허태열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특수임무유공자에우에관한법률안

투표의원(218인)

찬성의원(218인)

강성구 강숙자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탁기
 김만제 김명섭 김병호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원길 김원웅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종호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금자 박명환
 박병석 박병운 박상규 박상희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주선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운 배기정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손희길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송신경 신계륜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철 안경률 안영근
 안상수 안상현 안정규 엄호성
 원유철 원희룡 유세훈 유용태
 유재규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만섭 이상배
 이상득 이상희 이성현 이승철
 이연숙 이완구 이용삼 이인기
 이윤성 이정일 이해구 이훈평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태완
 장광근 장성원 장태완 전재희
 전용원 전용학 전몽준 정세균
 정범구 정병국 정창화 정철
 정형근 조부영 조성준

이 상 배 이 상 수 이 상 회 이 성 현
 이 승 철 이 양 회 이 연 숙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형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협 이 호 응 이 훈 평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태 희 장 광 근 장 성 원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대 철 정 동 채 정 몽 준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창 화 정 철 기
 정 형 근 조 부 영 조 성 준 조 응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조 희 육
 주 진 우 천 용 택 최 명 현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승 수 한 충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함 승 희 허 태 열
 현 경 대 홍 문 중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실제 재석의원 218인, 기권의원 없음)

박 혁 규 박 희 태 배 기 선 배 기 운
 서 상 섭 설 송 응 송 광 호 송 병 대
 송 석 찬 송 영 길 송 훈 석 신 경 식
 신 계 룬 신 영 국 신 현 태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경 룬 안 대 룬 안 상 수
 안 상 현 안 영 근 안 택 수 양 승 부
 양 정 규 엄 호 성 오 경 훈 오 세 훈
 오 장 섭 원 유 철 원 희 룬 유 시 민
 유 용 태 유 재 규 윤 경 식 윤 두 환
 윤 여 준 윤 철 상 윤 한 도 이 강 두
 이 강 래 이 경 재 이 규 택 이 근 진
 이 낙 연 이 만 섭 이 방 호 이 병 석
 이 상 득 이 상 배 이 상 수 이 상 회
 이 성 현 이 양 회 이 연 숙 이 완 구
 이 용 삼 이 우 재 이 원 형 이 윤 성
 이 인 기 이 재 선 이 재 오 이 재 창
 이 정 일 이 종 결 이 주 영 이 해 구
 이 해 봉 이 협 이 호 응 이 훈 평
 이 회 규 임 인 배 임 종 석 임 진 출
 임 태 희 장 광 근 장 성 원 장 태 완
 전 갑 길 전 용 원 전 용 학 전 재 희
 정 균 환 정 대 철 정 동 채 정 몽 준
 정 문 화 정 범 구 정 병 국 정 세 균
 정 의 화 정 장 선 정 진 석 정 철 기
 정 형 근 조 성 준 조 응 규 조 재 환
 조 정 무 조 한 천 조 희 육 주 진 우
 천 용 택 최 병 국 최 선 영 최 연 희
 최 영 희 최 용 규 최 재 승 하 순 봉
 한 승 수 한 화 갑 함 석 재 함 승 희
 허 태 열 현 경 대 홍 문 중 홍 재 형
 홍 준 표 황 우 여 황 창 주

반대의원(4인)
 김 병 호 박 금 자 박 상 희 함 승 희
 기권의원(2인)
 서 병 수 이 승 철

○이러닝산업발전법안

투표의원(216인)

찬성의원(201인)

○畜産物加工處理法中改正法律案

투표의원(209인)

찬성의원(203인)

강 성 구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진 부 고 흥 길 구 중 태
 권 기 술 권 영 세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근 태 김 기 배 김 덕 규 김 덕 룬
 김 덕 배 김 동 육 김 락 기 김 만 제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방 립
 김 부 겸 김 상 현 김 성 순 김 성 조
 김 성 호 김 영 춘 김 영 환 김 옥 두
 김 용 갑 김 용 균 김 용 학 김 용 환
 김 원 길 김 원 응 김 일 윤 김 정 부
 김 정 숙 김 종 하 김 진 재 김 찬 우
 김 충 조 김 태 식 김 태 흥 김 택 기
 김 학 송 김 형 오 김 황 식 김 효 석
 김 희 선 나 오 연 남 경 필 남 궁 석
 도 종 이 맹 형 규 문 석 호 민 봉 기
 박 관 용 박 근 혜 박 병 석 박 병 윤
 박 상 규 박 세 환 박 시 균 박 원 흥
 박 인 상 박 종 근 박 종 완 박 종 우
 박 종 응 박 종 희 박 주 선 박 현 기

강 성 구 강신성일 강 인 섭 강 재 섭
 강 창 희 고 흥 길 구 중 태 권 기 술
 권 오 을 권 철 현 권 태 망 김 경 재
 김 경 천 김 광 원 김 기 배 김 덕 규
 김 덕 룬 김 덕 배 김 동 육 김 락 기
 김 명 섭 김 무 성 김 문 수 김 방 립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원길
김원웅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종호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원	김형오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금자	박명환	박병석
박병윤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주선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경식	신계륜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오장섭	원유철	원희룡	유용태
유재규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낙연	이만섭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원형	이운성
이인기	이재선	이재창	이정일
이주영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협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진출	임채정	장광근	장태완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균환	정대철	정동채	정몽준
정문화	정범구	정병국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주진우	천용택	최명헌	최병국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한승수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허태열	현경대
홍문종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반대의원(11인)

고진부	김근태	김영춘	김학송
박종근	유시민	이성현	이재오
이종걸	이호웅	함승희	

기권의원(4인)

김황식	임종석	장성원	정세균
-----	-----	-----	-----

○嬰幼兒保育法改正法律案(대안)에대한修正案

투표의원(225인)

찬성의원(215인)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고홍길	구종태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태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원길	김원웅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종하	김종호	김진재
김찬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금자
박명환	박병석	박병윤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주선
박진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운	서병수	설송웅	손희정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계륜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오장섭	원유철	유시민
유용태	유재규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만섭	이상수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양희
이상희	이성현	이승철	

이연숙 이완구 이용삼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종걸
 이주영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 협 이호용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태완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균환 정대철 정동채 정몽준
 정문화 정병국 정세균 정우택
 정의화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주진우 천용택 최명헌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한승수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함승희
 허태열 현경대 홍사덕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반대의원(1인)

권기술

기권의원(9인)

김충조 배기선 서상섭 송광호
 신경식 원희룡 이우재 정범구
 정장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투표의원(226인)

찬성의원(226인)

강성구 강신성일 강인섭 강재섭
 강창희 고진부 구종태 권기술
 권영세 권오을 권철현 권대망
 김경재 김경천 김광원 김근태
 김기배 김덕규 김덕룡 김덕배
 김동욱 김락기 김만제 김명섭
 김무성 김문수 김방림 김병호
 김부겸 김상현 김성순 김성조
 김성호 김영춘 김영환 김옥두
 김용갑 김용균 김용학 김용환
 김원길 김원웅 김일윤 김정부
 김정숙 김중하 김종호 김진재
 김찬우 김충조 김태식 김태홍
 김택기 김학송 김학원 김형오
 김황식 김효석 김희선 나오연
 남경필 남궁석 도종이 맹형규

문석호 민봉기 박관용 박근혜
 박금자 박명환 박병석 박병윤
 박상규 박상천 박상희 박세환
 박시균 박원홍 박인상 박종근
 박종완 박종우 박종웅 박종희
 박주선 박진기 박헌기 박혁규
 박희태 배기선 배기운 서병수
 서상섭 설송웅 손희정 송광호
 송병대 송석찬 송영길 송훈석
 신경식 신계륜 신영국 신현태
 심규철 심재권 심재철 안경률
 안대륜 안상수 안상현 안영근
 안택수 양승부 양정규 엄호성
 오경훈 오세훈 오장섭 원유철
 원희룡 유시민 유용태 유재규
 유홍수 윤경식 윤두환 윤여준
 윤영탁 윤철상 윤한도 이강두
 이강래 이경재 이규택 이근진
 이만섭 이방호 이병석 이상득
 이상배 이상수 이상희 이성헌
 이승철 이양희 이연숙 이완구
 이용삼 이우재 이원형 이윤성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재오
 이재창 이정일 이해찬 이주영
 이해구 이해봉 이해찬 이 협
 이호용 이훈평 이희규 임인배
 임종석 임진출 임채정 임태희
 장광근 장성원 장태완 전갑길
 전용원 전용학 전재희 정갑윤
 정균환 정대철 정동채 정몽준
 정문화 정범구 정세균 정우택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창화
 정철기 정형근 조부영 조성준
 조웅규 조재환 조정무 조한천
 조희욱 주진우 천용택 천정배
 최명헌 최병국 최병렬 최선영
 최연희 최영희 최용규 최재승
 하순봉 한승수 한충수 한화갑
 함석재 함승희 허태열 현경대
 홍문중 홍사덕 홍재형 홍준표
 황우여 황창주

○出席議員(246人)

강성구 강숙자 강신성일 姜仁燮
 강재섭 姜昌熙 高珍富 高興吉

위 원 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국회운영	정균환	유용태	새천년민주당

(1월8일)

○議案提出

水産業法中改正法律案

(1월6일 정부 제출)

1월7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幼兒保育法改正法律案(代案)에대한修正案

(1월8일 황우여 의원 외 38인 발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월8일 국회운영위원장 제출)

○議案審査

특수임무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3년8월12일 김성호·김부겸·김영환·김원웅·권오을·박양수·박인상·심재권·신기남·이미경·이재정·유시민·오영식·정병국·정장선·최용규 의원 발의)

(원안의결)

정무위원장 보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안

證券去來法中改正法律案

(이상 2건 2003년11월17일 정부 제출)

金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

(2003년10월8일 김정부·김황식·정의화·장광근·김동욱·최돈웅·이완구·이한구·나오연·박종근·임태희 의원 발의)

國稅徵收法中改正法律案(김효석 의원 대표발의)

(2003년10월17일 김효석·한화갑·강운태·강봉균·구종태·임종석·이용삼·배기운·전갑길·박상희·홍재형 의원 발의)

(이상 4건 수정의결)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완구 의원 대표발의)

(2002년7월24일 이완구·김홍신·이양희·원철희·조희욱·김윤식·김동욱·이미경·박종근·함석재·정우택·이상득·문석호·정진석·박재욱·임진출·김학원·조성준·김원웅·강신성일 의원 발의)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조재환 의원 대표발의)

(2003년6월13일 조재환·정철기·김경천·임종석·김옥두·심재권·이윤성·김성순·오영식·이훈평·김윤식 의원 발의)

國有財産法中改正法律案(박재욱 의원 대표발의)

(2003년9월10일 박재욱·김무성·도종이·허태열·박종웅·김진재·정문화·권철현·엄호성·권태망·안경률·유홍수·김형오·정형근·박시균·박혁규·이창복·안영근·이재창·김용학·김일윤·권기술·이협·정동영·김찬우·박헌기·이장래·박상규·한승수 의원 발의)

金融監督機構의設置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

(2003년10월22일 신기남·김경재·김근태·김상현·김성호·김원기·김원웅·김태홍·김희선·송영길·심재권·유재건·이장래·이미경·이상수·이종걸·이재정·이호웅·임종석·정동영·정동채·정범구·정세균·천정배·최용규·추미애·함승희·허운나 의원 발의)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法中改正法律案

(2002년11월5일 정부 제출)

課稅資料의제출및관리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정부 의원 대표발의)

(2003년10월8일 김정부·김황식·정의화·장광근·김동욱·최돈웅·이완구·이한구·나오연·박종근·임태희 의원 발의)

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中改正法律案(장성원 의원 발의)

(2003년11월6일 장성원 의원 외 32인 발의)

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백승홍 의원 발의)

(2003년9월25일 백승홍 의원 외 34인 발의)

特別消費稅法中改正法律案(장광근 의원 대표발의)

(2003년10월8일 장광근·황우여·양정규·하순봉·권기술·김용갑·안택수·김정숙·김문수·김동욱 의원 발의)

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맹형규 의원 발의)

信用保證基金法中改正法律案(맹형규 의원 발의)

(이상 2건 2002년3월27일 맹형규 의원 외 42인 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안(강운태 의원 대표발의)

(2001년11월24일 강운태·김민석·장성원·박용호·이정일·김방림·홍재형·이창복·김경천·안영근·강숙자·오세훈·김운용·심재권·김명섭·이원성·임종석·임채정·김영배·정세균·정동채·송영길·이훈평·장영달·최선영·허운나·신기남·최용규·박

상규·박양수·이낙연·송훈석·박상희 의원 발의)

調達事業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안상수 의원 대표발의)

(2003년4월4일 안상수·조응규·박명환·정병국·이해봉·김용학·윤경식·장광근·이강두·김황식·이운성 의원 발의)

調達事業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이정일 의원 대표발의)

(2003년5월27일 이정일·김원길·강운태 전갑길·김성순·강숙자·김상현·박병윤·임종석·김운용 의원 발의)

(이상 14건 폐기의결)

이상 18건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특수임무유공자보상에관한법률안(김성호 의원 대표발의)

(2003년8월12일 김성호·김부겸·김영환·김원용·권오을·박양수·박인상·박주천·심재권·신기남·이미경·이재정·유시민·오영식·정병국·정장선·천용택·최용규 의원 발의)

(수정의결)

국방위원장 보고

유아교육법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2001년12월6일 이재정·김경천·김덕규·김화중·설훈·임종석·전용학·이낙연·김근태·김원기·김원용·안택수·오세훈·장성원·송훈석·김방립·유재건·박양수·이창복·강운태·문화상·이훈평·장영달·유재규·박용호·신기남·조성준·김덕배·이원성·곽치영·신계륜·김영환·김택기·정대철·조재환·김효석·정장선·박인상·김희선·조배숙·김영진·한화갑·김성호 의원 외 9인 발의)

유아교육법안(김정숙 의원 대표발의)

(2003년4월1일 김정숙·김형오·양정규·권영세·김용균·남궁석·박명환·김명섭·김영선·서병수·박창달·권오을·윤경식·안경률·임인배·신현태·김황식·이우재·김용갑·김부겸·홍사덕·윤영탁·최병렬·정문화·이상득·김찬우·도종이·이연숙·박시균·박주천·주진우·김원길·박재욱·권태망·현승일·박희태·민봉기·이재오·정병국·김성조·권기술·엄호성·강재섭·이부영·전용학·이양희 의원 발의)

(이상 2건 대안폐기의결)

이상 2건 교육위원장 보고

畜産物加工處理法中改正法律案

(2003년10월28일 정부 제출)

(원안의결)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이러닝산업발전법안(이상희 의원 대표발의)

(2003년6월12일 이상희·김원길·김택기·김형오·남궁석·박상규·서상섭·이근진·강인섭·이승철·이재오·이재정·유한열·조성준·최병렬·최선영 의원 발의)

(수정의결)

산업자원위원장 보고

嬰幼兒保育法中改正法律案(엄호성 의원 대표발의)

(2003년10월21일 엄호성·박주천·정형근·이낙연·김문수·박종희·김만제·김원길·김윤식·임진출·이성현·권오을·권태망 의원 발의)

출산안정법안(백승홍 의원 대표발의)

(2003년8월11일 백승홍·민봉기·정문화·권태망·정갑윤·김윤식·함석재·맹형규·주진우·안택수·박시균·이병석·최병국·김동욱·최돈용·강신성일·하순봉·김기배·이상배·권기술·박상규·신경식·이해구·김문수·김만제·박종근·김락기·박혁규·윤두환·박헌기·윤영탁·강재섭·손희정·박세환·김광원 의원 발의)

社會福祉事業法中改正法律案(이원형 의원 대표발의)

(2003년10월24일 이원형·임인배·심재철·이인기·박승국·심재권·이운성·황우여·김형오·안상수·하순봉·장성원·이재선·권기술·박시균·천용택·이주영·윤경식 의원 발의)

아동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김희선 의원 대표발의)

(2003년10월30일 김희선·김덕규·김성호·김태홍·박명환·송광호·송영길·안상수·오경훈·유시민·이종걸·이창복·이호웅·장성원·조응규·권기술 의원 발의)

(이상 4건 폐기의결)

嬰幼兒保育法中改正法律案(조응규 의원 대표발의)

(2001년3월16일 조응규·김용갑·김종하·박원홍·윤한도·이원형·이인기·이상배·박종희 의원 외 124인 발의)

嬰幼兒保育法中改正法律案(이원형 의원 대표발의)

(2001년4월16일 이원형·심재철·임인배·박원홍·강재섭·박승국·이해봉·김홍신·임태희·김찬우·박창달·이상득·김만제·윤한도·조웅규·백승홍·윤영탁·박세환·박종근·박시균·권오을·고홍길·이원창·손희정·윤여준 의원 발의)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영유아보육법개정법률안(김홍신 의원 대표발의)

(2002년3월8일 김홍신·김원웅·오세훈·신기남·김태홍·정범구·원희룡·안영근·권기술·김명섭·추미애·이완구·김성순·조한천·정장선·심재철·김부겸·이종걸·박병석·이부영 의원 발의)

嬰幼兒保育法中改正法律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03년2월18일 심재철·조웅규·강창희·오세훈·이재오·고홍길·윤경식·권기술·박원홍·김형오·맹형규 의원 발의)

(이상 4건 대안폐기의결)

이상 8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請願審査

옥천조폐창부지매각철회에관한청원

(2003년8년25일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48-11 옥천조폐창매각철회를위한다책위원회 위원장 이인석 외 9694인으로부터 심규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서울지방병무청이전을위한국유지관리환재정요청수용에관한청원

(2003년10월4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95-101 조창숙 외 2654인으로부터 권영세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이상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이상 2건 재정경제위원장 보고

구미폐기물매립장설치반대에관한청원

(2002년9월18일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77 손유준 외 4인으로부터 김성조·정창화 의원의 소개로 제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환경노동위원장 보고

○計劃書提出

공적자금원리금상환내역및상환계획

(2003년12월31일 정부 제출)

2003년12월31일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

○書面答辯書提出

양성자가속기에관한질문서에대한답변서

(2003년12월30일 정부 제출)